

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

제정 2021.09.2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 명예의 전당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예의 전당 설치) 명예의 전당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설치한다. 단, 대학 내 설치된 명예의 전당과 함께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 사이버 명예의 전당은 대학 홈페이지 내에 구축·운영한다.

제3조(헌액 대상자의 자격)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자는 본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본교의 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탁월하게 이바지한 자
2. 존경할 만한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타의 본보기가 되는 자

② 제1항의 헌액 대상자 이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·단체를 특별 헌액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특별 헌액 대상자 선정은 제5조의 헌액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른다.

1. 교육 분야와 문화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·단체
2. 나눔과 기부, 봉사 등을 통해 본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·단체

제4조(헌액 후보자의 추천) ① 헌액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1. 교직원 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
2. 대외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
3. 자금 및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

② 제1항의 추천권자는 헌액 후보자 추천 시 별지 1호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주관부서의 부서장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헌액 후보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다.

제5조(헌액 대상자의 선정 절차) ① 총장은 제4조에 따른 헌액 후보자 중에서 제7조의 헌액 대상자 선정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)의 심사를 거쳐 헌액 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헌액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6조(헌액 대상자의 선정 주기) 헌액 대상자 선정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마다 선정할 수 있다.

제7조(헌액 대상자 선정위원회) ① 총장은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심의·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둔다.

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2.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
3. 명예의 전당 헌액 철회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전 등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현액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주관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본교에 20년 이상 재직 교직원
2.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

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, 위원의 임기는 명예의 전당 현액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추천서·공적조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현액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,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현액 대상자의 예우) ① 총장은 현액 대상자에게 별지 2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하고 본교의 주요 행사 참석 초청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0조(이의제기 및 확정) ① 총장은 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현액 대상자를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재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동 기간 내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선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의제기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확정된다.

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재심의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에 사실관계 등의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현액 철회) ① 명예의 전당에 현액된 자가 현액 이후 현액 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정·비리,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현액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액을 철회할 수 있다.

② 현액 철회는 선정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명예의 전당 전시내용) ① 명예의 전당에 현액 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현액 대상자 초상 및 인적 사항
2. 현액 대상자의 주요 업적 및 공적 사항과 관련 자료 등

② 제2조 제2항에 의한 사이버 전당의 전시내용도 제1항을 준용한다.

제13조(운영 및 관리) 명예의 전당 운영관리는 교육지원처에서 담당한다.

제14조(기타)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호] 헌액 후보자 추천서

[별지 2호] 공적조서

[별지 3호] 주요 경력 및 수상 내용

[별지 4호] 공적 사실 확인 조사서

[별지 2호]

공 적 조 서

성 명 (단체명)		(한자)	
생년월일		등록기관 및 등록번호(단체)	
주 소		연락처	
직 업		직 장 명	
직 위	(전화번호)		
공적요지	(대표적인 공적위주 작성 - 50자 내외)	공적분야	OOO부분
위와 같이 공적서를 작성 제출합니다.			
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위 성 명 (인)			
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			
20 년 월 일 추 천 자: 성 명 (인)			

※ 단체는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, 경력란에 '활동 실적'을 표기

[별지 3호]

주요 경력 및 수상 내용

주요 경력		수상 경력		학 력	
년월일	내 용	년월일	내 용	년월일	내 용
공 적 내 용					

공 적 내 용

※ 공적 사항 기재면이 부족할 경우 이면 계속 사용(3매까지 가능)

[별지 4호]

공적 사실 확인 조사서

성명		연락처	
확인대상		확인내용	
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내용(요약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주변여론 및 조사자 의견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특기사항			

조사자 직급 성명 (인)

직급 성명 (인)